

제335회 임시회

2014. 10. 17.(금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과 관련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기능(안 제3조) : 안전의 심의

- 제2종·제3종 교통물류거점, 광역·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사항
-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,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

나. 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

-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됨

#### 다. 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됨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### 5. 검토내용

#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,
-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
- 동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나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항의 조문이 일부 중복되는 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,

- 안 제5조 위원의 위촉, 그리고 제8조 위원회 운영 사항 중 일부 조문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그 밖의 조문 내용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서 위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지만,
- 나.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